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 가. 재가복지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홍보지, 차량부착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월 이용한도(장기요양건강보험 85%)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 2) 본인부담금(장기요양등급인정자 15%)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 본인부담금 15% 납부.
 - 3)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의 경우 9%, 6%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정부부담)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가.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 할 수 없다)
-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마. 급여제공 중 알게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라.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마.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 나.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7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 다.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모집방법)

-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보호자 요구에 의한 입소를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 나.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 다.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6.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나. 장기요양인정서
- 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마. 수급자 신분증 사본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증가액)	2,069,900 (184,900)	1,869,600 (179,600)	1,455,800 (38,600)	1,341,800 (35,600)	1,151,600 (30,500)	643,700 (19,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4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 (15% 기준)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15% 기준)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 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수급자 0%

*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가의 30%를 가산 청구